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96

발의연월일: 2022. 7. 21.

발 의 자: 김두관·강민정·강준현

고민정 • 김승원 • 김정호

신정훈 · 양정숙 · 윤건영

정성호 · 정필모 · 조정훈

주철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 과표구간 가운데 중·저소득층 대상 과표구간은 지난 2008년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된 이후 올해로 15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오랜기간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그간 종합소득 6개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는 총 29.6% 증가한 데 반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은 40% 가까이 증가했음. 동기간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줄어, 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아울러 현 정부는 주식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 불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감세 기조를 표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담분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자산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초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도 인정됨.

이에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 과세 시작 구간(6%)을 최초 1,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중위 소득 과표구간도 2,500만원~6,000만원(15%), 6,000만원~1억원(24%), 1억원~1억5천만원(35%)으로 개정하도록 함. 또한 기존 1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30억원(45%)으로 조정하고, 30억원 초과(50%) 초고소득 구간을 신설함(안 제55조제1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2,5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2,500만원 초과	150만원 + (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675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63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385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9,085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억7,085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2어0 NOE마이 + (1N어이오 호기됩니 그래이 4E코웨드)	
30억원 이하	3억8,085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30억원 초과	12억8,085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	. 제55조(세율) ①
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리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u>종합소득</u> 세 율	<u>종합소득</u> 세율
과세표준 게 될	<u>과세표준</u> <u>개월</u>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2,5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u>2,500만원 초과</u> <u>150만원 + (2,500만원을</u>
4,6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6천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을	<u>6천만원 초과</u> <u>675만원 + (6천만원을</u>
8,8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u>1억원 이하</u> <u>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u>)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을	<u>1억원 초과</u> <u>1,635만원 + (1억원을</u>
1억5천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1억5천만원 초과 3,385만원 + (1억5천만원을
3억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u>3억원 초과</u> <u>9,460만원 + (3억원을 초</u>	<u>3억원 초과</u> <u>9,085만원 + (3억원을 초과</u>
5억원 이하 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u>5억원 이하</u> <u>하는 금액의 40퍼센트)</u>
<u>5억원 초과</u> <u>1억7,460만원 + (5억원을</u>	<u>5억원 초과</u> <u>1억7,085만원 + (5억원을</u>
10억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 + (10억원을	<u>10억원 초과</u> <u>3억8,085만원 + (10억원을</u>
호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u>30억원 이하</u> <u>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u>)
	30억원 초과 12억8,085만원 + (30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